

## II. 연구 과정

1. 공공요금(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요금)은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 모든 은행의 통장 이체가 가능하고, 은행에서 접수·신청을 받는다는 점과 고지서에 자동이체 안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제도는  
첫째,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받고 있었으며,  
둘째, 은행은 접수받은 그 자료를 결제원에 송부하고,  
셋째, 금융결제원에서는 신청내역을 해당기관에 인터넷 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지방세 자동이체제도에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3. 금융결제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공요금의 자동이체는 “납부자 번호”라는 고유번호를 가장 중요한 키값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계량기번호, 핸드폰의 경우 핸드폰번호, 전화요금의 경우 전화번호 등을 납부자 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를 결제원의 “납부자 번호”로 사용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III. 연구 결과

1. 금융결제원의 자동계좌이체 제도를 지방세 유지보수 업체의 실무자 의견 검토 결과 지방세 자동이체에 접목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2002. 3. 5.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기관으로 등록 후,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지방세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수록할 수 있고,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자동이체 청구내역을 인출하여 결제원에 송부하는 연결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유지보수 업체에 의뢰 1개월에 걸쳐 개발하여 2002. 4. 3부터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인터넷 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2002. 7. 2일 정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처리 하게 되었다.
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인쇄하여 홍보하였고, 은행에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은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자동이체 업